

수원지방법원 2022. 9. 21 선고 2021가단570312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신용보증기금

대리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운영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케이(담당변호사 곽은정, 김보현)

변 론 종 결 2022. 7. 20.

판 결 선 고 2022. 9. 21.

주 문

2. 인천 강화군 C 묘지 893m에 관하여,

가. 피고와 D 사이에 2020. 8. 1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한다.

나. 피고는 D에게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20. 8. 19. 접수 제25485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하여 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를 보증하여 기업의 자금유통을 원활하게 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특수법인이다.

나. 원고는 골판지상자 제조업 등을 하는 D(상호명 'E')의 신용보증의뢰에 따라 2018. 11. 8. D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고, 보증금액 4,000만원, 보증기한 2024. 11. 6.로 된 신용보증서를 발급해 주어, D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아 부담하는 채무 중 4,000만원을 신용보증 하였다.

다.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르면, 원고가 위 보증채무를 이행하였을 때에는 D은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금액과 이행일 이후의 손해금, 해지되지 아니한 보증금액에 대한 보증료 납입일 익일부터 보증소멸일 전일까지 당해 보증건의 최종 적용보증료율에 일정 비율을 가산한 위약금 및 기타 원고가 해당 가지급한 법적절차비용 등 모든 부대채무를 지급하기로 약정되었다.

라. 그런데 D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1억원을 대출받은 후 채무를 불이행하여 연체금액이 누적되었고, 그로 인하여 2021. 4. 26. 기한의 이익을 상실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그후 원고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위 신용보증서에 기한 대위변제 요청을 받고 2021. 11. 2.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40,353,413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마. 피고는 화성시 F 소재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함)의 대표이사이자 발행주식 1만주 중 9,500주를 소유한 대주주이다. G은 2019. 6.경 D에게 박스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박스를 공급하였는데(D은 위 박스를 조립하여 축산가공식품업체 등에 공급하였다), D은 2019. 11.경까지 발생한 물품대금은 모두 지급하였으나, 2019. 12.부터 2020. 6.까지 발생한 물품대금 140,998,000원 중 42,034,000원만을 결제하여 98,964,000원을 미납하였다(대금지급일자는 2020. 1. 31. 1,000만원, 2020. 2. 10. 2,000만원, 2020. 5. 6. 450만원, 2020. 5. 26.

100만원이다).

바. 이에 D은 위 미지급물품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2020. 8. 18. 자신이 소유하는 부동산인 인천 강화군 C 묘지 893m(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함)에 관하여 G의 대표이사이자 최대주주인 피고와 사이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라고 함)을 체결하고, 인천지방법원 강화등기소 2020. 8. 19. 접수 제25485호로 근저당권설정등기(채권최고액 1억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피고,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함)를 경료해주었다.

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전에 이미 2016. 7. 19. 채권자 기술신용보증기금에 의한 가압류등기(청구금액 9,800만원, 2016. 7. 19. 대전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 원인), 2016. 7. 29. 채권자 재단법인 H에 의한 가압류등기(청구금액 459만원, 2016. 7. 29.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 원인)가 경료되어 있었고,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이후에 2021. 2. 22. 채권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의한 가압류등기(청구금액 100,983,315원, 2021. 2. 19. 창원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 원인), 2021. 3. 30. 채권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한 압류등기, 2021. 4. 20. 채권자 원고에 의한 가압류등기(청구금액 4,000만원, 2021. 4. 20. 수원지방법원의 가압류결정 원인)가 경료되었다.

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D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달리 재산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 사건 부동산의 2020년 공시가격은 46,346,700원(893㎡ x 51,900원)이고, 감정가액(원고 의뢰, 주식회사 I 감정)은 4,998만원 정도이다. 그리고 D의 채무는 위 가압류 채권자들인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9,800만원, H에 대한 459만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100,983,315원, G에 대한 물품대금채무 98,964,000원 및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으로 인한 장래의 구상채무 4,000만원 등이 있었다.

[증거 : 갑 1, 2, 3, 4, 5, 6, 7, 8, 9호증, 을 1, 2, 3, 5, 6, 7, 8, 9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의 전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인정여부

1) 채권자취소권에 의하여 보호될 수 있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하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지만, 법률행위 당시에 이미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0다64792 판결).

2) 위 인정사실 및 채용증거에 의하면, 원고는 2018. 11. 8. D에게 신용보증서를 발급하여 D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원을 4,000만원 범위에서 보증을 하였고, 그후 D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원의 원리금상환을 연체하여 2021. 4. 26.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는 2021. 11. 2. 위 신용보증서에 의거하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40,353,413원을 대위변제하였는바, D이 피고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할 당시인 2020. 8. 18.에는 이미 원고의 D에 대한 신용보증계약이 체결되어 있어 채권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성립되어 있고, 가까운 장래에 위 신용보증계약에 기하여 원고의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으며 실제로 가까운 장래에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구상금 채권이 발생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채권도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사해행위 해당성 및 선의 여부

1)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빠져 있는 채무자가 그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채권자들 중 1인에게 채권담보로 제공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채권자들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되는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고(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43352 판결 등 참조),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수익자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채권자는 그 법률행위를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인데(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12526 판결 등 참조), 위와 같이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담보제공 등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할 경우에,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음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객관적이고도 납득할 만한 증거자료 등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고,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 등에만 터잡아 그 사해행위 당시 수익자가 선의였다고 선뜻 단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

2) 위 인정사실 및 채용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D은 이 사건 부동산 외에는 달리 재산이 없고,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4,998만원 정도인 것으로 보이는데, 채무는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9,800만원, H에 대한 459만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에 대한 100,983,315원, G에 대한 물품대금 98,964,000원 및 원고에 대한 장래의 구상채무 4,000만원 등이 있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

그런 상태에서 D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자들 중 1인이라고 할 수 있는 피고에게만 채권최고액 1억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다른 채권자들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D의 피고에 대한 담보제공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이 사건의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피고가 그 법률행위 당시 선의였다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한 원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취소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그것이 D의 다른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라는 점에 관하여 자신은 선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선의 인정에 관한 위 법리 및 G은 D에게 일정기간 공급한 물품의 대금을 지급받지 못하자 후에 이 사건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그 당시 이미 이 사건 부동산에는 2개의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을 4, 5, 6, 7, 8, 9, 10, 11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위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D 사이에 2020. 8. 1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은 사해행위이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는 D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판사 곽동우